

4. 韓國住宅協會 設立認可公告 (大韓住宅建設事業協會・住宅事業共濟組合)

建設部 公告 第1993-67, 68, 69號

◎ 建設부공고제1993-68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 및 동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사업자 단체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.

1993년 4월 29일

건설부장관

- 명 칭 :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
- 전화번호 : 782-2966
- 소재지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-21
- 대표자 : 허진석
- 주민등록번호 : 480413-1177321
- 인가일자 : 1993년 4월 23일
- 설립목적 :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◎ 建設부공고제1993-69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 및 동법 제47

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사업자 단체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.

1993년 4월 29일

건설부장관

- 명 칭 : 한국주택협회
- 전화번호 : 549-3178
- 소재지 :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-2 (건설회관 4층)
- 대표자 : 류근창
- 주민등록번호 : 260510-1052411
- 인가일자 : 1993년 4월 23일
- 설립목적 :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◎ 建設부공고제1993-67호

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인가하였기 동법 제4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3년 4월 27일

건설부장관

1. 조합명 : 주택사업공제조합
2. 주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-21
3. 이사장 : 태황준
4. 조합원가입자격 :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
5. 업무범위
 - 가. 하자보수보증·손해배상보증·지급보증·분양보증 및 기타보증
 - 나. 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운영자금,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

- 다. 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
- 라. 조합원의 주택사업용자재의 구매
- 마.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, 교육에 관한 사항
- 바.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사. 조합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
- 아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자.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